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5227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10.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110,424원 및 그 중 20,136,489원에 대하여 2023. 4. 24.부터 2023. 8.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3. 2. 1. 접수 제3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관한 주장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110,424원(= 대위변제금 20,136,489원 + 확정손해금 46원 + 채권보전비용 973,889원) 및 그 중 20,136,4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8.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사해행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무자(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을나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A에게 분양대금으로 2021. 6. 18. 1,000만 원, 2021. 9. 1. 1억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A는 2021. 9.경 피고에게 '양평군 C 일대 1만평 중 400평을 1억 2,000만 원1) 에 계약하였으며, 2022. 6. 30.까지 등기를 돌려드리지 못할 시 현금으로 반환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③ A가 2022. 6. 30.까지 피고에게 양평군 임야를 분양하지 않고 현금도 돌려주지 않자, 피고는 2022. 12. 2.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022. 12. 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④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2023. 2. 1. A와 매매대금을 4억 원2) 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사해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성립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2023.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강제집행 등이 별도로 없었던 점, ③ 원고의 피보전채권(A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3. 4. 24. 발생한 점, ④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충남 금산군 D 임야, 양평군 E 전원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박근규

별지

1) 평당 30만 원씩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분양 시까지 현금 보관 이자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1억 1,000만 원만 지급받음.

2) 임차인 F의 보증금 2억 2,500만 원, 피고의 피해금액 1억 2,000만 원, 형사고소 및 가압류 비용, 취득등록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함.